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21

발의연월일: 2024. 8. 21.

발 의 자 : 염태영 • 이기헌 • 백혜련

강준현 · 김준혁 · 박상혁

김태선 • 박 정 • 이병진

이인영 • 박홍배 • 김남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어야 함.

그런데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도록 할 뿐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간 입장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에 업무 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택배사업자가 영업점을 대상으로 위탁구역을 회수하는 것이 용이해져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일을 잃게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현행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제11조에서 규율하는 계약해지 시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우회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제3호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8호의2를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8의2.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구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제1항 중 "작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를 "작성하고 보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을 "표준계약서를"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를 "소화물대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로 한다.

②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는 상호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한다)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

- 의 위탁 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영업점 및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39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관련 권리의 보호 등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제51조제1항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10의2.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명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	제15조(등록의 취소) ①
부장관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	
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	
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
	여 표준계약서 또는 위탁계약
	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u><신 설></u>	8의2.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위탁구역을 명시하
	지 아니한 경우
<u>8.</u> (생 략)	<u>9.</u>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표준계약서) ① 국토교통	제32조(표준계약서) ①
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	
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	

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재

작성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②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는 상호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 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 또는 택 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 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 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 의 위탁 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명시하여 야 하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 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영업 점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 사자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④ -----표준계약 서를-----소화물대송대행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 서비스인증사업자에------

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수 있다.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 저 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 3의2. (생 략) <신 설>

4. • 5. (생략)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의3. (생 략) <u><신 설></u>

<신 설>

_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u>.</u>
·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관련
권리의 보호 등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4.·5. (현행과 같음)
제51조(과태료) ①
<u>.</u>
1. ~ 9의3. (현행과 같음)
10.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
여 표준계약서 또는 위탁계약
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

	반하여 위탁구역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명
	시하지 아니한 자
<u>10.</u> ~ <u>14.</u> (생 략)	<u>11.</u> ~ <u>15.</u> (현행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